

# 2023년 건강일터 조성지원(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)

## 1 사업개요

□ 사업목표: 신체적 피로,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비용 지원으로 직업성질환 예방에 기여

### □ 공모신청

○ 신청기한: '23. 2. 1.(수) 09:00부터 ~ 3. 3.(금) 18:00(재원소진시까지)

### ○ 신청방법

-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(붙임1)에 따라 보조금 신청·접수
- 오프라인으로 신청서(붙임2) 제출(우편발송 또는 일선기관 방문)

#### 【신청서류 다운로드 방법】

☞ 공단 홈페이지(kosha.or.kr) → 사업소개 → 재정지원 → 건강일터 조성지원 → 공지사항

○ 지원품목: 휴게실 및 냉·난방기 등 휴게시설 품목

- 보조지원 대상 휴게실은 투자완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(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)(붙임3)를 충족하여야 함

○ (문의) 1644-8845

지사	연락처	주소	관할지역
서울광역본부	02-6711-2826	(04512)서울시 중구 칠패로 42, 7층 산업보건센터	서울시(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, 서초구, 강남구, 용산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은평구)
서울남부지사	02-6924-8734	(07254)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8, 8층	서울시(영등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)
서울동부지사	02-2086-8024	(05836)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35, 4층	서울시(성동구, 광진구, 송파구, 강동구, 중랑구, 노원구, 강북구, 도봉구, 성북구)
강원지역본부	033-815-1057 033-815-1090	(24436)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	강원도(춘천시, 원주시, 홍천군, 인제군, 화천군, 양구군, 횡성군), 경기도(가평군)
강운동부지사	033-820-2571	(25512)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 정관빌딩3층	강원도(강릉시, 속초시, 동해시, 태백시, 삼척시, 양양군, 고성군, 영월군, 정선군, 평창군)

## 2 지원대상

### □ 신청대상

#### ○ 개별 휴게시설

- 산재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

\* 건설업은 건설업 본사만 지원 가능

-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\* 규모 이하의 기업의 사업주

\*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 가능한 중소기업 확인서 [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]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
#### ○ 공동 휴게시설

- 개별 휴게시설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공동 신청
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

※ 산업단지 내 사업주 단체, 산업단지 관리주체가 공동 휴게시설을 신청하는 경우, 『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개선사업』으로 지원

### □ 지원제외

○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제외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

#### 【 지원제외 대상】

- ①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
-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-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
-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미가입 하였거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
- ⑤ 건설업(건설업 본사를 통한 건설현장 지원불가, 단 건설업 본사에 설치하는 경우는 인정)
- ⑥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작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

### 3 지원금액

#### □ 지원금액

○ 개별휴게시설 :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 한도

- (지원비율) 공단판단금액 기준 대상별 지원비율 적용

지원비율	구분	비고
공단 판단금액의 7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상시 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</li> <li>▶ 지원대상 사업장 중 7개 취약직종*이 종사하는 사업장 * ①전화상담원, ②텔레마케터, ③돌봄서비스 종사원, ④배달원,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, ⑥건물경비원, ⑦아파트경비원</li> <li>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에 따른 고열작업, 한랭작업, 다습작업이 있는 사업장</li> <li>▶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* *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4호에 해당하는 작업</li> </ul>	냉난방시설 소파(의자), 테이블(탁자), 조명등 휴게비품·설비만 신청할 경우 공단 판단금액의 50% 지원
공단 판단금액의 5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상기 조건 외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</li> <li>▶ 상기 조건 외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</li> </ul>	

○ 공동휴게시설 : 최대 1억원(단, 다수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 최대 3천만원)

- (지원비율) 공단 판단금액의 70%

#### 신청 주체별 한도액

- ① 다수 사업주 신청시 : 사업주 당 3천만원 초과 불가  
(한도 예시 : 2개 사업장이 설치시 6천만원, 3개 사업장 설치시 9천만원, 4개 이상 사업장 신청시 1억원)
- ② 지식산업센터 관리하는 자 신청시 : 최대 1억원

### 4 지원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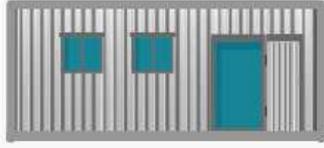
#### <사업추진 절차>



## 5 지원품목

### 1 휴게실

#### ① 신규 설치



[예시]

- (최대지원한도) : 보조금 지원 한도 내
- (수량) 제한없음(단, 부지 및 이동거리를 고려한 적정 수량)
- (지원조건) 사업장 건축물 내부공간 내 적정면적으로 **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(휴게시설 설치.관리기준) 충족**  
 ※ 보조금 지급 요청(투자완료)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「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」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

#### □ 보조지원 기준

- 견적서(상세내역포함)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 후,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원가(검토)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  
 ※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(제작)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결정
- 공사종류.금액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있는 업체만 시공 가능(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)
- 화장실, 샤워실, 수도공사는 포함되지 않음
- 건축법, 소방법,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사항(인허가 등)은 신청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, 위법사항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 있음  
 ※ 관련법령 위반으로 지급설비가 설치완료 후 철거 등 이루어질 경우 지급금액 환수

#### □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

- ①견적서(상세내역서 포함), ②도면, ③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(또는 배치도), ④시공관련 면허 사본(공사금액에 따라 해당 시)

#### ② 개선(리모델링)



[예시 사진]

- (최대지원한도) : 보조금 지원 한도 내
- (수량) 제한없음(단, 부지 및 이동거리를 고려한 적정 수량)
- (지원조건) 사업장 건축물 내부공간 내 적정면적으로 **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(휴게시설 설치.관리기준) 충족**  
 ※ 보조금 지급 요청(투자완료)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「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」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

#### □ 보조지원 기준

- 견적서(상세내역포함)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한 후,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원가(검토)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  
 ※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(제작)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결정
- 공사종류.금액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있는 업체만 시공 가능(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)
- 화장실, 샤워실, 수도공사는 포함되지 않음
- 건축법, 소방법,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사항(인허가 등)은 신청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, 위법사항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 있음  
 ※ 관련법령 위반으로 지급설비가 설치완료 후 철거 등 이루어질 경우 지급금액 환수

#### □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

- ①견적서(상세내역서 포함), ②도면, ③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(또는 배치도), ④시공관련 면허 사본(공사금액에 따라 해당 시)

### ③ 컨테이너하우스 또는 조립식



[예시]

- (최대지원한도) : 100만원/1m<sup>2</sup> (바닥면적 기준)
- (수량) 제한없음(단, 부지 및 이동거리를 고려한 적정 수량)
- (지원조건) 사업장 공간 내 적정면적으로 **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(휴게시설 설치.관리기준) 충족**
  - ※ 보조금 지급 요청(투자완료)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「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」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

#### □ 보조지원 기준

-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“나라장터 종합쇼핑몰(<https://www.g2b.go.kr>)”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, 물품(모델)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(가격결정 근거자료)로 함
-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이 없을 경우 견적서(상세내역포함)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한 후,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(제작)원가(검토)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
  - ※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(제작)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결정
- 별도의 배송.설치비가 소요되는 경우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 명기된 금액을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가능(보조금 결정 시 반영 후 완료 시 확인)
- 화장실, 샤워실, 수도공사는 포함되지 않음
- 건축법, 소방법,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사항(인허가 등)은 신청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, 위법사항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 있음
  - ※ 관련법령 위반으로 지급설비가 설치완료 후 철거 등 이루어질 경우 지급금액 환수

#### □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

- ①견적서, ②상품상세정보(카달로그, 제품상세설명서 등), ③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(또는 배치도)

## ② 휴게시설 비품·설비

### ①-1 냉·난방기(벽걸이 및 스탠드형)



[예시]

- (최대지원한도) : 200만원/1EA
- (수량) 휴게실 당 1대로 제한
- (지원조건) 적정온도(18~28℃)를 유지할 수 있는 냉·난방 및 제습기능이 있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(이동식 제외)
  - ※ 온·습도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일 경우 온·습도계 개별 설치
  - ※ 보조금 지급 요청(투자완료)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「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」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

#### □ 보조지원 기준

-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“나라장터 종합쇼핑몰(<https://www.g2b.go.kr>)”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, 물품(모델)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\*(가격결정 근거자료)로 함
  - \* 실내기, 실외기 및 배송·설치비용 포함 가격(기본시공 외 추가시공 비용은 제외)

#### □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

- ①견적서, ②상품상세정보(카달로그, 제품상세설명서 등), ③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(또는 배치도), 등 제출

### ①-2 냉·난방기(천장형)



[예시 사진]

- (최대지원한도) : 보조금 지원 한도 내
- (수량) 휴게실 당 1식\*으로 제한
  - \* 실내기는 휴게실 크기에 따른 적정수량, 실외기는 1대로 제한
- (지원조건) 적정온도(18~28℃)를 유지할 수 있는 냉·난방 및 제습기능이 있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(이동식 제외)
  - ※ 온·습도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일 경우 온·습도계 개별 설치
  - ※ 보조금 지급 요청(투자완료)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「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」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

#### □ 보조지원 기준

- 천장형에어컨의 경우 콘트롤러 설치, 공조공사 등 현장 조건에 따른 설치조건이 달라 표준화된 가격산정이 어려우므로, 견적서(상세내역포함)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 후,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원가(검토)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
  - ※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(제작)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결정

#### □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

- ①견적서(상세내역서 포함), ②도면, ③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(또는 배치도) 등 제출

## ② 쇼파(의자) [근로자 휴게용]



[예시]

- (최대지원한도) : 50만원/1인용
- (수량) 휴게실 면적과 동시 사용인원\*을 고려하여 적정 수량 (배치도 확인)
- \*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 포함한 동시사용인원
- ※ 보조금 지급 요청(투자완료)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「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」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

### □ 보조지원 기준

-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“나라장터 종합쇼핑몰(<https://www.g2b.go.kr>)”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, 물품(모델)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(가격결정 근거자료)로 함
-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지원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휴게실을 자유롭게 이용가능하여야 함

### □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

- ①견적서, ②상품상세정보(카달로그, 제품상세설명서 등), ③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(또는 배치도), ④도급관계 증빙서류(해당할 경우) 등 제출

## ③ 테이블 [근로자 휴게용]



[예시]

- (최대지원한도) : 100만원/1EA
- (수량) 휴게실 면적을 고려하여 적정 수량(배치도 확인)
- ※ 보조금 지급 요청(투자완료)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「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」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

### □ 보조지원 기준

-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“나라장터 종합쇼핑몰(<https://www.g2b.go.kr>)”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, 물품(모델)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(가격결정 근거자료)로 함

### □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

- ①견적서, ②상품상세정보(카달로그, 제품상세설명서 등), ③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(또는 배치도), 등 제출

## ④ 조명시설



[예시]

- (최대지원한도) : 보조금 지원 한도 내
- (수량) 제한없음(단, 부지 및 이동거리를 고려한 적정 수량)
- (지원조건) 휴게실 내 적정 조도(100~200lux)를 충족하는 조명
- ※ 보조금 지급 요청(투자완료)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「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」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

### □ 보조지원 기준

- 견적서(상세내역포함)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 후,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업가(검토)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
- ※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(제작)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결정

### □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

- ①견적서(상세내역서 포함), ②도면, ③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(또는 배치도), ④공사업가계산서 등 제출
- ※ ④공사업가계산적서는 투자완료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작성한 ‘원가계산(검토)보고서’를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생략 가능(별첨1 「공사(제작)품의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」 참조)

# 붙임1 건강일터 조성지원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

선정 항목	항목별 가중치	비고
<b>■ 일반 항목</b>	<b>90점</b>	
① 휴게 취약직종 근로자 종사 사업장 - 전화상담원(39912), 돌봄서비스 종사원(4211), 텔레마케터(5313), 배달원(922),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(941), 아파트 경비원(94211) 및 건물경비원(94212)	20점	사업장 정보조회(공단 ERP)와 신청서류(사업자등록증 등)를 통해 확인 <산재업종> (90101)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, (90104)기타의사업-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(중업종), (90102)위생 및 유사서비스업, (50105~50111)화물운수업 택배업.퀵서비스업, (90714)기타의사업-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<고용업종> (75991)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
② 고열·한랭·다습작업장 ※ 해당 시 증빙자료 제출	20점	안전보건규칙 제559조의 고열작업, 한랭작업 다습작업이 있는 사업장에 한해 인정 ※ 고열작업의 경우 작업환경측정고열 실시 여부로 확인 ※ 한랭·다습작업의 경우 현장사진, 공정설명서 등으로 판단하며 투자계획서 사실여부 확인
③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을 하는 사업장 ※ 해당 시 증빙자료 제출	15점	(야간작업)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4호에 해당하는 작업야간특검 실시여부로 확인
④ 사업장의 영세성	10점	10인미만 10점, 10~20인미만 5점
⑤ 근골격계, 뇌심혈관계 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병이 발생하였던 사업장	10점	최근 3년간('20~신청일) 산재승인된 사례에 한함
⑥ 고령근로자 수 - 만 55세 이상 근로자 수	최대 5점	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해 확인 고령근로자* 1명당 1점 부여
⑦ 신규 설치 대상 사업장	5점	별첨2 보조지원품목 중 휴게실 신규설치(사업장 건물 내부공간 내 적정면적에 휴게실 신규설치)
⑧ 공단 보조사업 최초 지원 사업장	5점	
<b>■ 자율활동 우수항목</b>	<b>10점</b>	
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* * ①노사문화우수기업 ②강소기업 ③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④NCS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 ⑤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기업 ⑥일자리 으뜸기업 ⑦일터혁신 우수기업(인증) ⑧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⑨산학협력 우수기업 ⑩여름휴가분산 우수기업	최대 5점	각 1점씩 * 사업장에서 인증(포상) 등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
⑩ 공생협력 참여한 협력업체, KOSHA-MS 인증,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기업	5점	(공생협력) '22~'23년 참여업체에 한함 (위험성평가인정) 공단에서 인정한 것으로 인정기한 내일 경우에 적용
<b>계</b>		
<p>※ 선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공통적용 항목 순번 (①→②→③→④→⑤→⑥→⑦→⑧)으로 우선순위 적용 → 자율활동 우수항목(⑩→⑨) 항목별 우선순위 적용하고, 이후에도 동점일 경우에는 근로자수 적은 순으로 선정</p> <p>※ 증빙자료 미제출 시 미적용</p> <p>※ 투자계획 확인 등을 통하여 증빙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신청 및 자금결정 취소</p>		

## 붙임2 제출서류

### 신청서 제출

- 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서(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포함)
  - ②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  -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
  - ④ 청렴의무 이행서약서(공단↔사업주)
  - ⑤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(반드시 사업주의 자필 서명 후 제출)
  - ⑥ 사업자 등록증
  - ⑦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
  - ⑧ 상품설명서(카달로그 등) 또는 외관도면 등[설치항목, 사양서 및 도면(가격근거서류 포함)]
  - 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
  - ⑩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
  - ⑪ 지원품목 설치대상 장소에 대한 사진 증빙서류(현장 사진 등)
  - ⑫ 공동휴게시설 보조금 참여 확인서(공동휴게시설 신청 시)
  - ⑬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점수부여 증빙서류(해당할 경우만 제출)
    - (고열작업)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사본
    - (한랭.다습작업) 해당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사진, 공정설명서 등)
    - (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) 야간특수검진 결과 사본
    - ①노사문화우수기업 ②강소기업 ③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 
④NCS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 ⑤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⑥일자리 으뜸기업 ⑦  
일터혁신 우수기업(인증)  
⑧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⑨산학협력 우수기업  
⑩여름휴가분산 우수기업
    - KOSHA-MS 인증서, 위험성평가 인정서
- \* 신청일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해 점수가 부여됨

- 주) 1. 사업주가 원할 경우 공사원가계산서(제작원가계산서)를 자금지원 신청 시 제출 가능  
 2. ⑫ 다수 사업장이 공동휴게시설에 대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  
 3. 다수 사업장이 공동휴게시설에 대한 보조금 신청 시 참여 사업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나누어 각각 신청

### 투자완료 확인

- ①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
- ②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
- ③ 세금계산서(청구용) 사본
- ④ 구매.설치 계약서 사본
- ⑤ 공사(제작)원가(검토)보고서
- ⑥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
- ⑦ 지급보증보험 증권
- ⑧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
- ⑨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
- ⑩ 휴게시설 투자완료 점검 확인서

- 주) 1. 다수 사업장이 공동휴게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각각 나누어 신청한 경우 ③ 구매·설치 계약서에 모든 사업주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함  
 2. 자금신청 시 공사(제작)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결정받은 경우 ④ 생략

## 붙임3 휴게시설 설치·관리 기준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)

### 1. 크기

- 가.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. 다만,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(이하 이 표에서 “공동휴게시설”이라 한다)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.
- 나.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.1미터 이상으로 한다.
- 다.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, 이용자 성별,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 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.
- 라.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, 이용자 성별,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.

### 2. 위치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- 가.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.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.
- 나.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.
  - 1) 화재·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
  - 2)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
  - 3)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

### 3. 온도

적정한 온도(18℃ ~ 28℃)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.

### 4. 습도

적정한 습도(50% ~ 55%. 다만,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.

### 5. 조명

적정한 밝기(100럭스 ~ 200럭스)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.

### 6.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.

### 7.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.

### 8.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.

### 9.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.

### 10. 휴게시설의 청소·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.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.

### 11.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.

#### ※ 비고

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.

가.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: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

나.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: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

다.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: 제4호의 기준